

신규 법률 및 중요 세금 정책 업데이트

2020년 11월



Content

본 뉴스 레터에서 Grant Thornton Vietnam은 최근에 발표 된 중요한 정책에 대해 데이트하고자합니다.

- 1 2020 년 9 월 정기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 한 결의안 No.149 / NQ-CP
- 2 세금계산서, 문서 및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 의무 기한을 규제하는 시행령 No.123 / 2020 / ND-CP
- 3 세금 및 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에 관한 시행령 No. 125 / 2020 / ND-CP
- 4 '조세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규제하는 시행령 126 / 2020 / ND-CP
- 5 세무조사 절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결정문 1215 / QD-TCT
- 6 법인세(CIT) 계산시 공제 가능 비용에 대한 회신 공문 12452 / BTC-TCT
- 7 가족인원 공제에 관한 공문 4590 / TCT-DNNCN

1. 2020 년 9 월 정기 총회에서 정부가 발표 한 결의안 No.149 / NQ-CP

2020 년 10 월 10 일, 정부는 2020 년 9 월 정기 총회에서 결의안 No.149 / NQ-CP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No.149에 따르면 정부는 CIT 계산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Covid-19 방역 활동에 대한 기부 및 지원을 인정 등의 재무부의 제안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국무 총리로부터 이 문제를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 문서 및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 의무 기한을 규제하는 시행령 No.123 / 2020 / ND-CP

2020 년 10 월 19 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문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No.123 / 2020 / ND-CP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No. 123 / 2020 / ND-CP는 2022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년 11 월 1 일부터의 세금계산서 적용과 관련하여 “2020 년 11 월 1 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를 규제하는 정부의 2018 년 9 월 12 일자 시행령 119 / 2018 / ND-CP의 제 35 조 2 항 및 4 조”를 삭제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무관리법’의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에 따라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관, 조직 및 개인은 2022 년 7 월 1 일 이전에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2 년 7 월 1 일부터는 신설된 시행령 123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시행령 123 / 2020 / ND-CP의 시행일 이전에 세무당국에 i) 자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ii) 주문 세금계산서 또는 iii) 구매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은 Decree No. 51 / 2010 / ND-CP 및 Decree No. 04 / 2014 / ND-CP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문서에 대한 현행 규정에 따라 2022 년 6 월 30 일(신규 발행도 포함될 수 있음)까지 이 세금계산서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문서 및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 의무 기한을 규제하는 시행령 No.123 / 2020 / ND-CP

기타 관련 안내지침:

2022 년 7 월 1 일 이전, 현지 세무 당국 (예 : 호치민 및 하노이 세무서)에 대한 몇 가지 지침과 최근 논의에 따르면 기업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문 인쇄 및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No. 51 / 2010 / ND-CP의 규정에 따른 자체 인쇄 및 주문 인쇄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기업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행 된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판매 재화 및 각 판매 서비스마다 기업은 각 한 가지 형태의 송장을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호치민시 세무서의 협의에 따르면 기업이 내수 판매와 수출 활동을 동시에하고 이를 원천 징수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 할 경우, 수출 물품을 보유 할 때 회사는 "수출 상품에 대한 VAT 환급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시행규칙 No. 119 / 2014 / TT-BTC 제 3 조 7 항"에 따라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사용합니다.상업 송장은 2019 년 6 월 13 일자 세무 관리법 No. 38 / 2019 / QH14의 제 89 조 2 항에 규정 된 전자 송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지침을 이행하기 전, 다시 한번 관할 세무당국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3. 세금 및 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에 관한 시행령 No. 125 / 2020 / ND-CP

2020 년 10 월 19 일자 시행령 No. 125 / 2020 / ND-CP는 일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2020 년 12 월 5 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벌과금이 부여되지 않는 여러가지 사례 명시(정보기술 문제로 인한 행정위반,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위반,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 및 추가신고하여 전액 지불한 경우 등)
- 이전 벌과금과 비교하여 여러 사례의 경우 행정 벌과금 구간 (예 : 마감일 이후 세금 신고서 제출)에서 최대 벌금 수준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 된 기한을 넘어 세금 신고서 제출의 행정 위반에 대한 벌과금 구간의 경우, 이전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VND 2,000,000에서 최대 VND5,000,000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125 호에 따르면 새로운 벌과금은 VND 8,000,000에서 VND 15,000,000입니다.
- 세액 (세금 부족, 탈세 또는 세금 면제, 감면 또는 환급 된 세금)이 VND100,000,000 또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치가 VND500,000,000 이상인 행정 위반은 대규모 행정 세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가중 부과)
- 10 개 이상의 세금계산서 번호에 대한 행정 위반은 대규모 송장에 대한 행정 위반으로 정의됩니다. (가중 부과)



3. 세금 및 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에 관한 시행령 No. 125 / 2020 / ND-CP

➤ 삭제 목록

- 2013 년 10 월 16 일자 시행령 No. 129 / 2013 / ND-CP의 I 및 III 장;
- 조항 2, 4 조, 1 장; 4 장; 정부가 발행 한 2013 년 9 월 24 일자시행령 No.109 / 2013 / ND-CP 44 조 5 장
- 정부가 발행 한 2016 년 5 월 27 일자 시행령 49 / 2016 / ND-CP의 3 조.
- 2013 년 11 월 15 일자 시행규칙 166 / 2013 / TT-BTC;
- 2014 년 1 월 17 일자 시행규칙10 / 2014 / TT-BTC;
- 재무부가 발행 한 2016 년 10 월 31 일자 시행규칙176 / 2016 / TT-BTC.
- 이 시행령 이전에 조세 또는 청구서에 관한 행정 위반이 발생하였으나 이 시행령부터 위반이 종료 된 경우 소급적용합니다.
- 이 시행령 제 1 장, 제 2 장 및 제 3 장에서 정의된 과태료에 대하여, 세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행위를 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과태료 결정 연기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조세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규제하는 시행령 126 / 2020 / ND-CP

2020 년 10 월 19 일, 정부는 2019 년 세무 행정법 시행령 No. 126 / 2020 / ND-CP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세금 및 기타 지불금 관리를 국가 예산에 적용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0 년 12 월 5 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의 감면 및 취소 정책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는 잘못된 세금신고서에 대하여 보충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보충신고로 납세의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보충신고서 없이, 보충 설명서만 제출
- 연말 세금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별 및 분기별 신고서 제출 시 보완
- 연간 세금 확정 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 연간 세금 확정 신고서만 추가 제출 (소득자에 대한 PIT 확정 신고 보충 제외, 그 외 오류가 있는 경우 월 또는 분기의 추가 신고서 제출 필요)
- 보충신고가 VAT 금액을 증감 혹은 감소시켜 차기 이월시키는 경우 반드시 당기에 신고되어야 한다.
- 납세자는 차기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금 환급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 요청 VAT 금액을 증가하기 위해 신고서를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만을 운영하는 법인, 소득이 면제 된 개인과 같은 일부 사례는 세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법인은 세금 코드를 폐쇄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수출 사업만 운영하는 EPE는 VA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126은 또한 각 세금 유형 및 해당 조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분기 별 세금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1 년 동안 월별 또는 분기 별로 선택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절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결정문 1215 / QD-TCT



2020 년 9 월 3 일 재무부는 세무 심사 절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결정문 No. 1215 / QD-TCT를 발표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정보 기술 적용을 강화하여 검사 및 감독을 계획하고 세금 신고 서류를 확인
- 월별 및 분기 별 세금 신고서 : 세금 신고서의 100 % 검사.
- 2019 년 및 아직 검사 및 검토되지 않은 연도의 세금 신고서 및 세금 확인에 중점.
- 납세자는 이메일, 우편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일하는 것과 같은 이전 양식 외에도 세무 국의 웹 포털을 통해 정보, 문서 및 설명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설명서에는 규정된 디지털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 세무조사팀은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문서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통지를 보냅니다. 과세국 웹 포털; 세금 이메일 주소; 동시에 등록 된 전화 번호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문서, 정보 및 문서 전송 결과를 알리고 확인합니다.

본 결정문은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6. 법인세(CIT) 계산시 공제 가능 비용에 대한 회신 공문 12452 / BTC-TCT

2020 년 10 월 9 일, 재무부는 Covid-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중단 된 고정 자산과 관련된 CIT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해 답하는 회신공문 12452 /
BTC-TCT를 발행했습니다.

특히Covid-19의 영향은 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졌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2020 년 과세연도의9 개월 미만
동안 다수의 고정 자산의 운영을 중단해야했습니다.
고정자산은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계속 사용된
것이었으며,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지 기간 동안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됩니다.





7.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공문 4590 / TCT-DNNCN

2020 년 10 월 28 일, 국세청은 연도별 PIT 확정 계산 시 외국 전문가의 PIT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공문4590 / TCT-DNNCN을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 출근하는 전문 외국인 인 납세자가 거주자 인 경우 1 차 과세 연도 확정기간 (2019 년 7 월 ~ 2020 년 6 월) 준비시 2019 년 7 월 ~ 2019 년 12 월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VND9 백만 / 월 (개인공제) 및 360 만 VND / 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2020 년 1 월부터 2020 년 6 월까지 월 1,100 만 VND (개인공제) 및 440 만 VND / 월 (부양가족공제)의 새로운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 이전, 외국인의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 정책,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과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소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권혁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 Transfer Pricing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grantthornton.com.vn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